

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전부개정

1. 개정이유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시행규칙 일부개정(2025. 8. 7. 시행) 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절차를 정하는 등 화학물질안전원 및 지방환경관서 담당자(이하 “담당자”라 한다)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신설로 기존 영업허가의 의무와 특례 사항 등을 준용하여 담당자의 민원업무 처리절차 개정(제2장제3호부터 제8호까지 등)
- 나. 영업허가로 관리되던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은 영업신고 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담당자의 민원업무 처리절차 개정(제2장제9호 등)
- 다. 영업허가로 관리되던 제한물질이 허가신고 대상으로 이원화 됨에 따라 담당자의 민원업무 처리절차 개정(제3장제4호 등)
- 라. 기타 업무별 처리기준 수록(제4장 등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화학물질관리법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 호

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
전부개정 예규안

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.